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1 발의연월일: 2020. 6. 29.

발 의 자:신현영・이형석・오영환

정청래 · 최혜영 · 고영인

김병욱 · 김정호 · 임오경

권인숙 · 김남국 · 고용진

백혜려 • 이워욱 의위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남 창녕의 9살 아동이 '아동학대 위기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 아동으로 지정되었는데도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학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 등을 보건복 지부장관과 공유하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조 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이 어렵고 감시의 사각 지대인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이유로 아동이 사망 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바, 사회보 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발굴 하고 이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상 요양급여 실시 기록이 없거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등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서비스의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4(위기아동의 발견·조사 및 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보호대상아동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동(이하 "위기아동"이라 한다)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없는 경우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경우
 - 3.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중 담당교 원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경우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 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의 기준, 발견·조사의 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5조의4(위기아동의 발견·조
	사 및 보호) ① 보건복지부장
	관,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보호
	대상아동의 조기 발견과 신속
	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해당 아동(이하
	"위기아동"이라 한다)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
	시한 기록이 없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실
	시한 기록이 없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중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에 처
	하여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 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서 비스의 제공, 제15조에 따른 보 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 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 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의 기준, 발견·조사의 시기·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